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4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 김주영·신정훈·권칠승

이장섭 · 이병훈 · 김정호

김홍걸 • 윤영덕 • 강훈식

김승원 · 문진석 · 송영길

김민기 · 강선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 조제9항제8호, 제24조의2 및 제37조).

법률 제 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 다.

- ③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 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 |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 | 9 |
| 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 |
| 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 | |
|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 |
| 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 |
|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 |
|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 |
| 하여야 한다.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
| | <u>안전확인 시험·검사를 실시한</u> |
| | <u>경우</u> |
| ⑩·⑪ (생 략) | ①·①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 |
| | <u>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u> |
| | 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 |
| | 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
| |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 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 실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 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 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